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89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문진석 · 이기현 · 김교홍
장종태 · 이재관 · 안태준
채현일 · 윤종균 · 이연희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가처분) ① 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가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처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처분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자료제출요구) ①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해당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은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 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의무이행소송

제38조의2(원고적격 등)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제38조의5(의무이행판결) ①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2. 그 밖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②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2. 그 밖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제38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8조의5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주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의 효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제38조의7(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4條(抗告訴訟) 抗告訴訟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第4條(抗告訴訟) ----- -----. 1. ~ 3. (현행과 같음) 4. <u>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u> <u>제24조의2(가처분) ① 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가처분을 할 수 있다.</u> 1. <u>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u> 2. <u>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손해를</u>

<신 설>

피하거나 급박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처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처분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자료제출요구) ①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해당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은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 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신 설>

<신 설>

<신 설>

한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의무이행소송
제38조의2(원고적격 등) 의무이행
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
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
다.

제38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
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
무이행소송은 법령에 처분기간
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
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제38조의5(의무이행판결) ① 법원
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판결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2. 그 밖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②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2. 그 밖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신 설>

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제38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간접
강제) ① 행정청이 제38조의5
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
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
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
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
1심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
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

<u><신 설></u>	<u>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u> <u>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의 효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u> <u>제38조의7(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u>
---------------------------	---